

주빌리은행과 함께하는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

2017. 11. 23. (목) 11:00~18: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

주최·주관



주빌리은행
ROLLING JUBILEE

주빌리은행과 함께하는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

2017. 11. 23. (목) 11:00~18: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

목 차

- 진행프로그램

CHAPTER 01 - 개최 및 인사말

- 환영사 : 김승수 전주시장
- 축 사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축 사 :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

CHAPTER 02 - 기초연설

- 빛탕감 운동의 의미, 성과와 과제

CHAPTER 03 - Session I '국내 정책'

- 국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방향

CHAPTER 04 - Session II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및 성과'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은평구금융복지상담센터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CHAPTER 05 - 연구보고

- 가계부채상담기구로서 센터의 역할 및 개선 방향

CHAPTER 06 - 종합토론

- 바람직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립근거, 기능 및 역할

주빌리은행과 함께 하는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

■ 진행 프로그램

시간	내 용
11:00 ~ 11:10	개회 및 인사말
11:10 ~ 11:35	기조연설 빛탕감 운동의 의미, 성과와 과제
11:35 ~ 12:00	Session I : 국내 정책 국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방향
12:00 ~ 12:15	부실채권 소각행사
12:15 ~ 14:00	점심 식사
14:00 ~ 16:00	Session II :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및 성과 전주시 / 광주 광산구 / 전남 / 성남시 / 경기도 / 은평구 / 서울시
16:00 ~ 16:20	Coffee break
16:20 ~ 16:50	연구 보고 가계부채상담기구로서 센터의 역할 및 개선 방향
16:50 ~ 17:50	종합 토론 바람직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립근거, 기능 및 역할
17:50 ~ 18:00	폐회

주빌리은행과 함께 하는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

CHAPTER 01

개회 및 인사말

-
- (환영사) 김승수 전주시장
 - (축 사)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축 사) 김명지 전주시의회회의장

환영사



김승수

전주시장

여러분 복지란 무엇일까요?

흔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금전과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복지는 기초생활에서부터 교통,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복잡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복지가 추구하는 가치와 역할의 다양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금융복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해 서민들의 근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단순히 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며 다시 한 번 국가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주시가 금융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전주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구조 확립을 위해 다양한 금융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6년 개소한 '한줄기 빛 금융복지상담소'는 채무로 힘들어하는 시민을 구제하며 새로운 희망의 빛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소는 채무조정과정을 통해 12명의 소액잔액채무를 완전히 탕감하였으며, 쌍무 간 협상 조정 과정을 통해 16명의 금융기관 과다채무를 조정·감면시켰습니다. 또한 46명의 부실채권(8억 5천만원 정도)을 매입하여 소각시킴으로써, 빛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금융복지에 대한 공감대는 전주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등 금융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은 채무로 고통 받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이 시작되는 곳부터 관심을 갖고, 작은 곳에서부터 복지를 실현해가는 지자체의 증가는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7 주빌리은행과 함께하는 금융복지 컨퍼런스'에서는 '롤링 주빌리' 캠페인과 '금융복지상담'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금융복지 실현을 위해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의 진행과정과 성과를 진단하여,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미래 금융복지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뜻 깊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더욱 많은 지자체가

금융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참석을 위해 귀한 시간 쪼개어 발걸음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행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축 사



제 윤 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제윤경입니다.

우선 금융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소비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우리는 제도의 장벽 뿐 아니라 무관심, 편견, 오해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서로를 믿고, 그리고 채무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을 믿고 지금껏 달려와 주신 덕에 우리는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후원금을 모아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할 때만 해도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소각하고 채무자의 여건에 맞춰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변화는 머나 먼 미래의 일이지 않을까 싶어 막막했던 마음을 떠올리며 가슴 벅차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처한 현실이 워낙에 취약했던 탓에 우리가 지금껏 걸어온 길보다 더 길고 긴 길이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어 지금까지의 속도와는 견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도 생깁니다.

그래도 절대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변화가 시작도 되지 않은 비상식적인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어떤 종류의 채권채무 관계이든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상식적인 금융환경이 자리 잡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에 공적 가계부채 상담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금융복지 컨퍼런스를 준비하신 분들과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

온 거리의 낙엽이 가을을 흩뿌리는 아름다운 계절, 이 곳 전주에서 <2017 주빌리은행과 함께하는 금융복지 컨퍼런스> 개최를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과 각 센터 담당 등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세계 2위로 총 140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가구의 부채가 200조원 이상으로 나타나 국가의 금융위기를 우려케 하고 있습니다.

주빌리은행은 장기연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채무자들을 돕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의 따뜻한 기반이자 사람을 살리는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된 금융복지상담센터 또한 그동안 서민금융 해결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주거,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주는 등 개인의 과중한 부채를 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계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득, 신용등급, 부채 등 고도화된 금융사회 속에서 이러한 공익적 사업의 확대와 복지금융이 절실하며,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그러한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리라고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컨퍼런스가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도약을 선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빌리은행과 함께 하는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

CHAPTER 02

기조연설

-
- 빛탕감 운동의 의미, 성과와 과제 유종일 주빌리은행장

빚탕감운동의 의미, 성과와 과제

유종일

(주빌리은행장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주빌리은행이 펼쳐온 빚탕감운동이 상당한 결실을 거두고 있다. 주빌리은행 자체적으로 거둔 성과도 크지만 정부가 사상 유례 없는 적극적인 빚탕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1일부로 약 27조원에 달하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이 소각되었고 이로써 약 14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이후로도 추가적인 부실채권 소각이 추진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무탕감 정책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는" 정책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채무탕감 정책은 채무자들에게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서민금융을 위축시키는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본고는 빚탕감운동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빚탕감운동을 추진해온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의 경험과 성과를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의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1. 빚탕감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장기연체자의 채무 탕감은 그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다. 단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인간적 추심에 노출되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며, 죽음으로 내몰리기까지 하는 비정한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압도적 다수는 자산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로서 불운한 희생자일 따름이다. 어느 누구도 경제적 궁핍과 불운 때문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희망을 송두리 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회정의가 요구하는 최소한이다.

채무에 짓눌린 사람들을 그 부담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강도 높은 채권 추심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 설사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노력의 대가가 본인의 궁핍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사용되기보다는 채무상환에 사용된다면 어려움을 이기고 열심히 노력할 유인이 사라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어쩌다 돈이 조금 생기더라도 복권을 사는 등 일확천금을 노리는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채무 후유증(debt hangover)'이 초래하는 인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보다 채무 탕감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 더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

영국에 대해 많은 빚을 진 상태에서 출발한 미국은 상대적으로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었는데, 1898년의 파산법에서는 채무자 보호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정직한 사람

이 금전적으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를 나락에 방치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 오히려 그의 새 출발을 돕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하지만 빚 탕감 얘기가 나오면 언제나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조장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고생하며 빚을 갚은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변제 의무를 저버린 사람을 도와준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채무 탕감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주빌리은행이나 새 정부가 탕감의 대상으로 삼는 채무는 한마디로 갚지 않는 빚이 아니라 갚지 못하는 빚이고, 그러기에 도덕적 해이 나 형평성 문제는 실질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못지않게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금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채무자 권리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또한 인식해야 한다.

소액 장기연체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버틴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 빚을 갚지 못한 것뿐이며, 대부분 이를 매우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는 원금 이상의 금액을 이미 변제했으나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장기연체자가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고강도 추심과 사회적 배제의 고통을 장기간 감내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주었다고 해서 자신도 이와 같은 고통을 10년 이상 감당하며 채무 탕감의 수혜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주빌리은행에서 채권을 소각하고 빚탕감 안내장을 발송하면, 그동안 추심에 쫓겨 잠적한 탓에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태반인 것이 현실이다.

채무자에게 변제 의무가 있다면 채권자에게는 신중한 대출의 의무가 있다. 채무자의 갚을 능력과 의지를 잘 판단해서 돈을 빌려 주어야 한다. 이러한 신용평가 능력은 금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역량이다. 그런데 금융회사들이 실제로는 방만한 대출을 하고 결과적으로 부실을 양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우선 금융회사들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를 비롯한 남의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단기적 수익에 눈이 멀어 함부로 대출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그러다가 과도한 부실로 금융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여 정부가 구제해주는 일이 허다하다. 외환위기 당시에 시중은행을 비롯한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그랬고, 이후 카드사나 저축은행들도 그랬다. 구제금융에 대한 잠재적 기대는 마구잡이 대출을 더욱 조장한다. 이것이 전형적인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다.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은 채무자의 인권과 최소한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하는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과도한 추심의 허용이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극심한 추심을 예견하고도 채무자가 돈을 빌리지 않을 테다. 하지만 채권자는 이런 추심으로 채무자의 고통을 빨아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대출을 하게 된다. 이로써 지금 우리나라는 '빚 권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채무탕감이나 최고금리 인하, 과도한 추심 제한 등 채무자 권리 보호는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흔히 채무탕감을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의 신중한 대출을 유도하고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여 금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값을 수 없는 빚에 시달리는 이들의 빚을 탕감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아도 채무후유증을 해소하여 채무자의 재활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 이에 비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문제는, 탕감의 기준을 잘 설정한다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 주빌리은행의 경험과 성과

주빌리은행은 채무취약계층의 사회적 구제를 위해 일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2015년 8월에 출범하여 이제 2년 남짓 경과하였다.

채무취약계층의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2013년 금융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의 소득으로 빚을 갚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히 채무조정이나 탕감이 필요한' 채무취약계층이 350만명에 달하고, '소득활동이 전무하여 경제생활이 단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빚독촉을 받고 있는' 장기연체자가 114만명이라고 한다. 2012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대부업체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는 채무자가 111만명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인권을 짓밟는 부당한 추심이 만연하고 있으며, 채권추심을 경험한 사람의 76%가 정신적 고통, 생명의 위협, 가족관계 단절, 직장생활 곤란 및 실직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것이다.

주빌리은행은 장기연체자들을 지옥같은 채권추심에서 해방하고 재기의 희망을 주기 위해 부실채권 매입 및 소각, 금융복지상담, 채무자 교육, 금융제도 개혁운동 등 네 가지 활동을 전개해왔다. 첫째, 부실채권 매입 및 소각 활동은 공식 출범 이전인 2014년 4월의 첫 부실채권 소각 행사 이래 2017년 9월까지 38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4만8천 명이 넘는 채무자들의 7천6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탕감하고 이들에게 빚탕감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둘째, 이러한 채권소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들을 위해서는 금융복지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채권사 및 채무금액 파악, 채무조정제도 안내, 재무상담,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는다. 전국에 흩어져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 간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각 지자체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찾아가는 주빌리 상담소를 운영하여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출장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셋째, 채무자들이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소모임을 진행한다. 넷째,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과 장기연체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금융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빌리은행은 7천600억원을 상회하는 액수의 부실채권을 소각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처음 시작할 때 1년 동안 천억 원 탕감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나, 이 운동의 원형인 '롤링 주빌리'(월가 점령시위 이후 전개된 채무자 운동)가 약 350억 원 정도의 채권을 소각하는 데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큰 성과임에 틀림 없다. 개인의 성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 기업, 종교단체 등과 함께 빚 탕감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 유효한 덕분이다.

채권 소각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권 매입에 소요된 자금이 3억4천만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빌리은행이 소각한 부실채권 중 많은 부분이 무상으로 기부 받은 덕분이기도 하고, 또한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이 채권액의 2~3% 혹은 심지어 0.1%에 불과한 싼 값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심업체나 대부업체는 이렇게 헐값에 부실채권을 확보하여 고강도 추심을 진행함으로써 장기연체자들을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주빌리은행이 부실채권 소각에 주력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법과 제도적 개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가 채무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과거에 비해 훨씬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게 된 이면에는 이러한 주빌리은행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자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들이 약 21조7005억원(123만명), 그리고 보험사,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약 5조4614억원(18만9000명)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완료하였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의 내규를 고쳐 지속적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해 나갈 방침이며, 또한 약 4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민간 금융회사(대부업 제외)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완성채권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 등 각 금융업계에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를 위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했다.

지난 10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소득과 자산이 부족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취약차주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금리 대폭 인하,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 최대 1년간 유예,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원금감면 및 이자율을 조정 등의 정책을 포함했고,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하여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실업, 폐업 등 일시적인 이유로 채

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연체위험을 낮추고,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1.2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명, 1.9조원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며, 주요 금융기관 전국 지점에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은행, 금감원 등도 별도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기로 했다.

3. 향후의 과제

채무탕감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조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한편으로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갚을 수 없는 채무로 고통받는 모든 채무자들을 실질적으로 빚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무 탕감의 주체와 운영 원리가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채무탕감의 궁극적 목적은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의 재기와 경제적 자활이다. 단순히 기존의 채무를 없애주는 일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을 통하여 이들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채무탕감은 어차피 일회성 정책이고 대중적 처방이다. 근원적인 처방은 애초에 서민들의 장기연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금융제도의 개혁이다. 채권자의 책임과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며, 서민금융의 역할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채권자의 책임과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들은 대출 단계, 부실 발생 초기단계, 장기연체 단계 등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대출 단계에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LTV, DTI, DSR 등의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애초에 갚기 어려운 빚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실이 발생한 초기단계에서는 채무조정을 의무화하고, 부실채권 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적절한 채무조정의 노력도 없이 고강도 추심이 계속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연장이나 채권추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들이 추심의 고통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현행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채무자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채권자의 책임과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면 자칫 서민금융 시장이 위축되어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을 회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충

분히 예상되는 부작용으로서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서민금융의 역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중금리 대출이 제공되도록 서민금융을 설계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과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민금융이라는 미명 하에 만성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서민들이 빚을 내도록 도와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주빌리은행의 금융복지상담 케이스를 분석해보면 만성적인 생활비 부족을 빚으로 보충하다가 헤어날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진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이 아닌 고용과 복지로 문제를 해결해야 마땅하다. 복지체계를 충실하게 갖추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서민들이 당장 생계가 어려워 갚을 수도 없는 빚을 냈다가 끝 모를 고통의 나락에 빠지는 일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제도권 서민금융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를 충실하게 한다면 서민들의 고금리 급전 수요는 억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요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측면의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대부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고강도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기초적인 금융지식을 갖추도록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또한 현재 극히 일부의 지자체에서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빌리은행과 함께 하는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

CHAPTER 03

Session I

'국내 정책'

-
- 국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방향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주빌리은행과 함께 하는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

주빌리은행과 함께 하는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

CHAPTER 04

Session II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및 성과'

-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용규광 소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오현옥 팀장
 -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박찬규 센터장
 -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김미선 센터장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유건욱 팀장
 - 은평구금융복지상담센터 오종숙 센터장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

2017.11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지도

은평구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주체 |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상담전화 | 02) 351-8505
담당자 | 오종숙 센터장
이메일 | 201604022@ep.or.kr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주체 | 서울시복지재단(위탁)
상담전화 | 1644-0120
담당자 | 박정만 센터장
이메일 | finance119@welfare.seoul.kr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주체 | 사단법인 희망살림(위탁)
상담전화 | 031) 755-2577
담당자 | 김미선 센터장
이메일 | snfwc@daum.net

광명시채무상담센터

운영주체 | 광명시 지역경제과
상담전화 | 02) 2680-2677
담당자 | 이종한 팀장
이메일 | jun04070@korea.kr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주체 | 서울시복지재단(위탁)
상담전화 | 031) 888-5550
담당자 | 유건옥 팀장
이메일 | yookeonuk@gcgf.or.kr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운영주체 |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담전화 | 063) 288-0303
담당자 | 용규광 소장
이메일 | yongkk11@gmail.com

부산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주체 | 부산광역시활센터
상담전화 | 051) 714-5766
담당자 | 김남식 상담사
이메일 | boazkns@hanmail.net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주체 |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위탁)
상담전화 | 062) 954-0019
담당자 | 오현옥 팀장
이메일 | gs-fwc@gs-fwc.com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주체 | 전남신용보증재단(위탁)
상담전화 | 동부(순천) 061) 727-2590
서부(무안) 061) 285-3980
담당자 | 박찬규 센터장
이메일 | soodang@naver.com

사상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주체 | 사상구 지역경제과
상담전화 | 051) 310-4316
담당자 | 조진미 주무관
이메일 | chojinmee@korea.kr

주빌리은행

상담전화 | 1661-9736
담당자 | 백미옥 국장
이메일 | rolling.jubilee.kr@gmail.com
홈페이지 | www.jubileebank.kr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I. 상담센터 추진 경위

1.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2016.9.5 설립되어 동년 9월20일 개소하였으며, 2017.2.28.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2.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전주지역 서민, 특히 취약계층의 과중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여 이들의 신용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드리고자 전주시민회 등의 노력과 김승수 전주시장의 열정으로 설립되어 서민경제 안정화는 물론 가계부채 상담을 통해 정신적 지지자로 기여하고 있음

II. 운영 개요 및 현황

1. 개소일 : 2016.9 5.
2. 인원 및 조직 : 소장1명, 상담원 2명 등 총 3명
3. 운영기관 :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III. 기능

1. 가계부채 정리방법 상담 및 법률서류 작성(보정작업 포함)
2. 대 시민 교육(금융경제, 채무조정제도, 불법사금융피해 예방, 신용관리방법, 금융상품 및 가계재무관리 방안 등)

IV. 목표

1. 기본 목표
 - ① 전주시 취약계층 채무조정, 상담 및 법률 지원
개인회생, 파산, 개인워크아웃(연계) 및 직접 채무조정 등
 - ② 전주시 서민 가계부채 확대 예방
대 시민 교육 실시 (채무조정제도, 가계 재무관리, 불법사금융피해예방, 신용관리 요령,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 등)
 - ③ 사회안전망(복지 수요) 연계·복지수요 개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복지 수요 연계·개발
2. 기타 업무목표
행정과 위탁기관 및 시민회 등 유관기관 추진사항 보조 지원
o 주빌리은행 (부실채권 매입 소각) 업무 지원

V. 업무실적 (개소일부터 2017년 9월말까지 실적)

1. 상담실적

구분	유형별	2016년(a)	17년중(b)	누계(a+b)
상담 유형별	방문상담	199	438	637
	전화상담	286	463	749
유입 경로별	방송 (정류장)	238	263	501
	현수막(베너)	48	219	267
	기관연계	93	221	314
	지인	66	147	213
	인터넷(신문)	40	51	91
주요상담내용	채무조정	242	649	891
	재무상담	88	122	210
	기타	155	130	285
거주지역별	덕진구	198	382	580
	완산구	200	384	584
	기타	87	135	222
성 별	남	265	472	737
	녀	220	429	649
연 령 별	20대	2	13	15
	30대	72	124	196
	40대	158	351	509
	50대	165	270	435
	60대 이상	88	143	231
계		485	901	1,386

2. 주요상담 현황

① 법률구조공단 접수(건)		③ 쌍무간 채무 조정				
구분	누계	구분	누계(건)	조정액	채무총액	감면율(%)
파 산	37	후원금지원	12	11.12	122.6	90.9
개인회생	16	자가 부담	16	50.72	261.1	80.6
② 신용회복위원회 연계(건)						
112		합 계	28	61.84	383.7	83.9

3. 기타 부실채권 소각행사 (지원)

① 전북은행 채권을 원금기준 4%에 매입 일괄 소각

소각일	소각액	매입금액	원금	채무자수
2016.12.22	846,000,000	10,000,000	250,000,000	46명

VI. 상담사례 (예시)

채무조정 (개인회생 신청자 → 개인워크아웃 ; 채무 97.5% 면책)

신청인 : 최** (남, 62세)
 직 업 : 구두수선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주거사항 : LH 매입임대 Apt에 거주 (보증금 300만원, 월세 8만원)
 수급내용 : 기초수급자
 장애여부 : 장애4급 (척추 및 청각장애)
 채무조정 이력 : 파산을 신청했으나 기각됨

1. 신청 배경

신청인은 과거 회사에 재직하면서 발생한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로 지난 20여년간 압류 등의 두려움 때문에 통장하나 마음대로 개설하지 못하는 등 금융 이용 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과거에도 파산절차를 진행 했으나 소득(월 120만원 정도)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으며, 채무로 인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이 어려웠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에게 채무만 상속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의 짐까지 쌓여 어떻게든 채무를 정리하고 싶어 상담소를 찾게 되었다.

2. 검토사항

이에 상담소는 신청인의 채무조정을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법을 검토한 결과 신용회복위원회 회를 통한 workout을 추진기로 함

(1안)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채권(희망모아유동화전문 채권 포함) 개별 상환

: 보증인 분별이익 보장 및 기초생활 수급자는 원금(62,482,761)의 최고 70%까지 감면조정 가능,

법률비용은 100% 변제 함

→ 감면후 채무액 : 8,163,746원 (10년간 분할 상환)

* 대부업체 건(2,817,288원)은 별도 조정 필요

(2안) 개인회생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증빙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있어야 하나, 수입이 불규칙하고 자영업이라 객관적 소득 산출이 곤란하여 현실적으로 개인회생 추진 곤란

* 월소득 120만원 가정시 가용소득 월 20만원으로 60개월 변제(총 1,200만원)

(3안)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 일괄 정리 (자산관리공사와 대부업체 채무)

: 자산관리공사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상담소는 개인워크아웃진행시 신청인의 채무를 일괄조정 할 수 있고, 보증채무의 경우 보증인별 분별의 이익을 주장할수 있는 데다, 기초수급자는 상각채권의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음에 착안하여 채무자에게는 개인워크아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하기로 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워크아웃 참여를 설득함

3. 결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추진하여 최선의 결과 도출

총채무(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의 채권을 포함한 「자산관리공사채권」 과 「와이케이대부」 채권)를 일괄조정 추진하여, 채권총액 256백만원을 최종 9백만원으로 조정하여 원리금기준 96.5%를 탕감받고 3.5%를 96개월간 매월 94천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타결함.

→ 채무자는 크게 만족 함

4. 시사점 (채무조정시 고려사항)

채무자의 부담능력, 채무조정 방법별 감면범위, 연대보증인 유무 및 분할보증책임 여부, 채무상태(상각채권, 또는 시효경과 채권여부), 신복위 워크아웃 이용가능 여부 등을 세심히 고려하여 고객에게 최선의 방법 추진 필요

→ 이를 위해 채무조정방법별 구체적인 조정방법 습득 및 상담원의 상담역량 강화 필요

(신복위 채무조정 직접참관, 개인회생위원 및 파산관재인 교육 수강, 보정서류 작성, 재판과정과 채권자 집회 등에 채무자와 동행 참관 및 파산관재인 의견 조회 등 필요)

신청인의 채무 조정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채권자	채무자	채무액		조정후 채무액	감면액 (감면율)
		원금	이자포함		
자산관리공사	연대보증인(3명)	58.3	238.2	9.0 (96개월 상환)	247.4 (Δ96.5%)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	보증인(2명)	4.2	13.8		
와이케이대부	주채무자	2.8	4.4		
계		65.3	256.4		

광주광역시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I. 상담 센터 추진 경위

일 자	주 제	내 용
2015. 12. 10.	「롤링주빌리in광산」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1억 원 상당(59명)의 부실채권 소각 • 협약기관 : 광산구, 주빌리은행,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2016. 02. 18. ~ 02. 19.	서울·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자치단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운영사례와 성과 등을 통한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 방안 모색
2016. 03. 15.	금융복지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취지, 사업내용, 센터 설치, 협의체 구성 등
2016. 03. 03. ~ 05. 02.	관내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 조사 연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등록된 대부업체 및 구민 가계부채 실태조사
2016. 06. ~ 08.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공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광산구빛고을국민체육센터 4층
2016. 07. 26.	위·수탁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구-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위·수탁 협약 체결
2016. 08. 16.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 광산구 - 광지방방변호사회 -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2016. 08. 29.	개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식 개최
2016. 09. 01.~ 현재	상담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 및 채무조정 상담 업무 시작

II. 운영 개요 및 현황

개 요	2016년 8월 29일 ~ 2017년 11월 현재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1번길 28, 4층
인 력	상담사 2인, 사무원 1인
조 직	<pre> graph TD A[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 B[팀장] A --- C[상담사] A --- D[사무원] </pre>

III. 기능 역할, 목표

채무자 입장에서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채무조정에 대해 상담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새 출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

IV. 주요사업

1. 상담사업

- 재무상담 : 가정의 재무상황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관리방안을 제시
- 채무상담 : 빚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구민의 채무 과정을 종합 검토하고 해결과정을 조력, 각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를 제안하고 접수과정 조력
- 복지연계 : 상담자의 욕구 파악 및 관계 기관 서비스 연계

2. 채무자대리인제도

- 연체된 채무로 추심 당하는 구민의 고통을 변호사가 대리, 채무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 개선
- 등록대부업체 채무를 가진 구민을 대상으로 광산구에서 비용 지원

3. 교육사업

- 재무교육이 필요한 광산구 소재 관공서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관리, 신용관리, 지출관리, 가계부 작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실시
- 교육을 통해 현장 상담 혹은 내방상담 진행

4. 롤링주빌리 in 광산 캠페인

- 장기 부실채권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에게 빚 고통 해방 및 새 출발 기회 지원
- 빚 탕감 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 2015년 12월 9일 롤링주빌리 IN 광산 캠페인 : 59명 채무자 빚 탕감 (총채권액 3,045,837,184원)

* 2016년 12월 29일 롤링주빌리 IN 광산 캠페인 : 15명 채무자 빚 탕감 (총채권액 983,740,616원)

V. 상담 실적 [※개소(2016.09.01.) ~ 2017.09.31. 기준]

- 상담유형별 (누적기준)

구 분	방 문	유 선	온라인	합 계	비 율(%)
채무조정	619	966	5	1,590	93.8
재무상담	24			24	1.4
복지상담	30	39		69	4.1
일반문의	1	11		12	0.7
합 계	674	1,016	5	1,695	100
비 율(%)	39.8	59.9	0.3	100	

- 채무조정 현황 (누적기준)

구 분	접수 건수	채무액	비 율(%)	
채 무 조 정	파 산	38	649,288만원	41.3
	회 생	12	91,534만원	13.0
	신용회복	11	41,216만원	12.0
	채무자대리인 (변호사지정)	31	69,922만원	33.7
합 계	92	851,960만원	100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I.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개요

1. 설립일 : 2016.05.10. (설립근거: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2. 설립배경

가계부채 등의 재무상태 악화로 고통 받는 도내 금융소외계층에게 서민금융, 재무컨설팅, 채무조정, 복지자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

3. 운영현황

구 분	상담사	위 치
서부센터	4명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동부센터	4명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전남신용보증재단 3층)

4. 상담실적 (2016. 5. 10. ~ 2017. 9. 30.)

(단위 : 건, %)

구 분	총 계		방 문		전 화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합계	5,228	100	1,678	32.1	3,550	67.9
채무 조정	소계	4,263	81.5	1,469	2,794	
	파산	1,703	32.6	584	1,119	
	회생	996	19.0	366	630	
	신용회복	1,564	29.9	519	1,045	
금융(대출)	545	10.4	119	426		
재무상담	126	2.4	30	96		
복지상담	177	3.4	25	152		
불법사금융	25	0.5	8	17		
채권협상	92	1.8	27	65		

※ 채무조정 81.5%, 금융(대출) 10.4%, 복지상담 3.4%, 재무상담 2.4%, 채권협상 1.8%

II. 「전남 서민 빛 탕감 프로젝트」 제 1회 부실채권 소각식

1. 자의 부실채권 소각을 통해 경제활동 재기 지원

금융기관의 소멸시효 완성 및 부실채권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과 지역공동체 회복

2. 서민 빛 소각 대상

- ① 기초생활수급자, 상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채무이거나 상인,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자 생계형 채무
- ② 담보 능력이 없어 신용으로 대출받은 서민채무 중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

3. 추진 경과

① 「서민 빛 탕감 프로젝트」 추진 MOU 체결

- 도 ↔ 주빌리은행(2016.02.01)
- 도 ↔ 여성벤처협회, 상인연합회, 도자기협회, 목포신협, 문화신협(16.12.27)

② 채권기부 : 50억(13개 금융사)

문화신협	목포신협	용해신협
꿀벌신협	목포대성신협	북교신협
목포우리신협	여수중앙신협	녹동신협
해남신협	완도제일신협	진도장등신협
목포중앙새마을금고		

제1회 부실채권 소각 (2017. 4. 6.)

- 소 각 액 : 413명, 50억(원금 23, 이자 27) *1인 평균 : 1,213만원(원금 560, 이자 653)
- 채무기간 : 평균 17.5년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1명(1백만원), 0.2%	13명(0.99억), 3.1%	399명(49억), 96.7%

- 채무자 연령별 분포 : 40~50대 > 60세이상 > 20~30대

20~30대	40~50대	60세 이상
1명(3백만원), 0.2%	261명(31.7억), 63.2%	151명(18.27억), 36.6%

- 성 별 : 남 280명(36억) 67.8% > 여 133명(14억) 32.2%



※ 2017.04.06. 부실채권 소각 퍼포먼스

III. 주요성과 및 결론

1. 빚으로 고통받는 전남도민들 대부분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가 있음에도 정보 부족과 복잡한 진행절차 때문에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또한 채무조정 제도들 대부분은 지나치게 채권자 중심이어서 각 개인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찾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음.
2. 이러한 전남도민들을 위하여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6년 5월 10일 개소하여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채권보다 인권을 중심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해주고 채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30일까지 총 5,528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이중 712건의 채무조정을 하였음.
3.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부채가 발생하는 근본원인 해결을 위하여 전남도내 각 사회복지기관, 유관기관등과 업무협약을 하고 상호보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을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평균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광주지방법원 면책선고로 다른 지역 금융복지상담센터보다 훨씬 빠르게 채무자들을 구제하고 있음
4. 또한 전남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채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인 고용불안정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으며 목포시건강가족지원센터등과 연계하여 채무로 인한 가족간의 불화와 관계단절 개선을 위하여 가족상담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음. 이와같은 복지서비스 연계로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전남도민의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5. 또한 부채의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재무교육 및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단체 및 해당지역 사회복지공무원들과 함께 통합사례관리회의 및 교육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험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음.

IV. 향후 계획

1. 전남 「서민 빚 탕감프로젝트」 지속 추진
 - ① 2017년 하반기 제 2회 빚 소각식 예정 : 목표액 100억원
2. 금융복지상담센터 기능 확대
 - ② 시·군 금융복지상담실 운영 체계 구축 : 2018년부터
 - 시·군 순회상담 추진(2017. 6월~) ⇒ 상시 운영체계 구축 협의(2017. 하반기)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I. 센터 운영 개요

1. 설립 근거: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014.11.10. 제정)
2. 센터 개소: 2015.3.6.
3. 설립 목적: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성남시민의 채무 조정, 복지, 채무 관리 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함.
4. 근무 인원: 상근 9명 (모니터링 요원 3명 포함)
5. 주요 사업: 상담사업/교육사업/홍보사업/대부업 모니터링사업/채무자대리인사업

II. 금융복지상담센터 실적 현황

구분	운영 내용					
	계(명)	상담 (야간상담포함)	채무조정 (법원접수기준)	채무자 대리인제	교육사업	대부업 모니터링
총계	24,588	10,915	517	172	11,858	1,126

III. 실적 현황 세부 내용

1. 상담 (2015년 6월부터 매주 화요일 6~9시까지 야간상담 진행 중)

연도	총상담	신규상담	재상담
2015	2,909	1,586	1,323
2016	4,238	1,338	2,900
2017	3,768	1,254	2,514

2. 채무조정

구분		인원수(명)	총채무액(백만원)	비고(누적)
개인회생신청	2015	52	3,150	개시-127/인가-91
	2016	60	3,941	
	2017	30	1,792	
파산면책신청	2015	103	19,457	면책-247
	2016	170	28,181	
	2017	102	23,178	
합계		517	79,699	

3. 채무자대리인제

연도	인원수(명)	대부업체 채무액 (백만원)	비고
2015	74	1,252	
2016	75	3,742	
2017	23	427	
합 계	172	5,421	

4. 대부업모니터링 (2015. 7. ~ 2017. 9. 현재)

연도	기관연계	채무조정	수사의뢰	상담&문의	계
2015	47	22	17	219	305
2016	99	16	27	291	433
2017	57	13	15	303	388

5. 시민교육

연도	교육횟수	참석인원 (연인원)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2015	88회	1,650명	상담사 양성과정, 밝은아이교사양성, 회생 및 파산 교육,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대응교육, 기타 재무 관리 교육 등	시민, 관내사례관리자 및 대학생 외 노인복지관 등 다수
2016	208회	4,971명	상담사 양성과정, 시민교육강사양성, 회생 및 파산 교육,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대응교육, 기타 재무 관리 교육 및 센터 홍보 강의 등	성남시민 및 센터 내담자 등 다수
2017	218회	5,237명	상담사 양성과정, 시민교육강사양성, 회생 및 파산 교육,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대응교육, 기타 재무 관리 교육 및 센터 홍보 강의 등	성남시민 및 센터 내담자 등 다수

6. 기타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세부 내용	실적 (비고)
2015	불법사금융 사례집 제작	- 불법 피해 사례 및 사건 관련 자료집	200부 제작
	센터 중간점검보고서 제작	- 센터 1차년도 상담 실적 분석 및 성과와 과제에 대한 컨설팅	150부 제작

2016	찾아가는 채무상담사업	- 기간 : 2016. 9 ~ 2016. 11 - 주민 센터, 복지관, 자활센터 및 관내 사례기관 현장 상담 진행	- 방문기관 : 60개 - 상담인원 : 158명
	가계부채 실태조사	- 기간 : 2016. 9 ~ 2016. 11 (11월 현재 진행중) - 관내 시민 대상 가계부채 현황 및 관내 대부업체 실태 조사 (설문지, 인터뷰 등)	- 총 대상인원 : 700명
2017	찾아가는 채무상담사업	- 기간 : 2017.4~ 2017.11.(현재 진행중) - 주민 센터, 복지관, 자활센터 및 관내 사례기관 현장 상담 진행	- 방문기관 : 41개 - 상담인원 : 132명

7. 내담자관리

연도	사업명	사업세부 내용	실적 (비고)
2016	파산면책자수료식	- 파산면책 받은 내담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절차 수료식을 진행, 새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함	- 8월 참석자 : 29명 - 11월 참석자 : 26명
	수기공모전	- 센터에서 상담 받은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기를 공모	- 공모참여 : 20명
2017	파산면책자수료식	- 파산면책 받은 내담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절차 수료식을 진행, 새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함	- 5월 참석자 : 24명
	수기공모전	- 센터에서 상담 받은 내담자, 활동하고 있는 시민강사, 유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기를 공모	- 공모참여 : 22명
	개인회생신청자대상소모임	- 개인회생 개시결정자를 대상으로 2달에 한 번 소모임을 진행, 5년간 잘 변제하여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	- 총 3회 진행 - 평균 2~3명 참석

8. 복지자원연계

연도별	2015	2016	2017	계
인원수(명)	18	26	30	74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I. 운영근거

1.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 굿모닝 금융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

II. 운영개요

1. 개 소 일 : 2015년 7월 22일
2. 상담대상 : 경기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과다채무자 등
3. 지원내용 : 채무조정, 재무상담, 복지자원 연계 등
 - (채무조정) 채무조정(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채무전환 등) 방안 설계 및 지원
 - (재무상담) 재무상태 진단 통한 운영방안 컨설팅
 - (복지연계) 상담고객 상황에 맞는 복지제도 안내 등
 - (불법추심) 대부업체 불법추심대응 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제도 추천 등
4. 상담운영 : 유선·내방·온라인 상담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 (유 선) 중앙센터 대표번호 (031-888-5550,5551)통해 상담
 - (내 방) 센터내방 통해 상담(예약제로 운영, 중앙센터 예약접수)
 - (온라인)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g-counseling.gcgf.or.kr>) 통해 상담
5. 센터조직 : 중앙센터 1곳, 지역센터 6곳 (상담사 총8명)



III. 기타사업

1. (찾아가는 현장상담 실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일자리버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센터 미설치지역 현장상담 서비스 제공(매월 3~4회)
2. (소액금융대출자 채무 컨설팅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 컨설팅 제공(875명, 20억)
3. (다문화가정 금융교육실시) 道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번역사 및 이주민여성 금융 기초교육 실시(9개 기관, 169명)

- 4. (올케어 상담서비스 실시) 고객과 상담사 1:1 매칭을 통해 금융복지주거일자리 등 신청에서 완료까지 통합서비스 지원
- 5. (민사예납금 지원) 개인파산 신청자 중 저소득층 대상으로 민사예납금 지원

IV. 지원실적

1. 전체실적

(기준일 : 2015. 07. 22. ~ 2017. 09. 30, 단위 : 건)

채무조정		재무상담		복지상담		채무자대리인		일반문의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8,730	76.3%	1,057	9.2%	325	2.8%	348	3.0%	988	8.6%	11,448

2. 개인파산·회생 지원현황 : 총 657건 중 265건 면책, 58건 변제인가

(기준일 : 2015. 07. 22. ~ 2017. 09. 30, 단위 : 건, 백만원)

	파산지원		면책		회생지원		변제인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원법원	243	48,140	137	30,843	55	4,848	32	2,013
의정부법원	287	78,881	124	28,967	64	4,606	25	1,904
인천법원	6	1,764	4	1,577	2	93	1	50
합계	536	128,785	265	61,387	121	9,547	58	3,967

3. 신용회복 및 서민채무자대리인 지원

(기준일 : 2015. 07. 22. ~ 2017. 09. 30, 단위 : 건, 백만원)

	신용회복		서민채무자대리인	
	건수	금액	건수	변호사선임
합계	201	6,914	83	71

은평구금융복지상담센터

I. 추진 경위

채무취약 계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차별화된 금융복지의 필요성 대두

II. 운영 개요 및 현황 :

1. 개소일 : 2016.4.22 (은평구 녹번역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3층)
2. 조직 : 센터장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공무원) 1명, 기간제 상담사보조 2명

III. 설치목적

가계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취약계층을 돕고 은평구민의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무진단 및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금융복지서비스 제공

IV. 상담실적 (2016.4.22~ 2017. 9.30)

1. 상담실적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전화상담	방문상담	단순문의	비 고
2017	505	278	207	20	2017.9 누계
2016	434	238	145	51	
합계	939	516	352	71	

2. 운영실적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정보 제공	채 무 조 정					복지 연계	재무 상담	기타
			소계	개인 회생	파산 면책	워크 아웃	전환 대출			
2017	505	259	183	31	109	31	12	37	6	20
2016	434	187	179	7	98	65	9	13	4	51
합계	939	446	362	40	207	96	21	50	10	71

V. 주요사업

1. 녹번 복지관 주민 대상 지출관리 및 재무 교육(2016. 10월)
2. 채무 취약계층의 최접점인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의 간담회 개최 및 통합사례회의 참석 (8회 기 실시 계속 진행중)
3. 사례집 발간 및 언론 홍보
: 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전환대출, 자체 채무조정, 등에 대한 사례를 등재 하므로써, 금융복지 상담에 대한 구민 홍보
4.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제작 (진행 중) - 2017. 11월 중 테스트를 거쳐 실시예정 (상담센터에 나오기를 꺼리는 청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함)

VI. 기타 사업 (채무상환과 강제퇴거 사례)

1. 내담자 : 김**(45세, 남) 생계기초수급자

- 재개발APT 임대료288,160원(월236,200+관리비51,960원)
주거급여 월200,000원 지원, 세대주 부담 88,160원,
- 장기연체로 인한 계약해지(2014.8.1)상태로 명도소송 제소되어 서부지방법원 강제집행신청(3.23)되어 퇴거 압박 중이었음,
- 보증금26,384,000 중 강제 퇴거시 장기 연체상환액을 공제하면 보증금 잔액10,577,419원 상환 수령 예상 되었음.
- SH공사로부터 강제퇴거에 대해 심한 압박을 받으면 담당 주민센터를 찾아와 직원들에게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하므로 직원 또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음.

2. 사례회의 결과

- 주민센터에서 구청 통합사례로 이첩되었고, 사례회의에서 해결책 강구함.
- 내담자가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거문제와 채무문제를 분리하여 해결하기로 함.
(주거이주 관련정보제공과 구체적인 플랜은 구청관계자와 주거복지센터에서 담당)
-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채무관련 상담으로 현금흐름을 파악하던 중 프리워크 아웃 상환 중임을 발견하게 되었음.
(프리워크아웃납부 : 2013. 12. 4 ~ 2017. 3 현재까지 40회 총 6,438,880원 납부 중이었음)
- 프리워크아웃은 즉시 중지하고 주거가 안정된 후 처리하기로 하였음.
- 현재의 채무는 기초수급 상태로 상환하기 어려우므로 중지 후 파산면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기초수급비의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도록 함.
- LH주택공사로부터 전세용자를 받아 이사 완료(9/22)되었으며 신복위로부터 납부 독촉 전화가 왔으나 잠시 중지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1.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2013. 07. 15. 개소)

1. 사업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대한 조례(2015.04.02.)

※ 서울시 출연 공공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중앙포함 6개 센터로 개소

2. 상담센터 현황(중앙센터 외 13개 지역센터)



- ① 금융복지상담관 28명, 행정지원 5명, 총 33명, 지역센터 1당 2명의 상담관
- ② 중앙센터 계약직 2인(센터장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울시복지재단 정규직
- ③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청년부채 특화 민간연계센터
- ④ 9개 지역센터는 구청청사 내, 2개 센터는 고용복지+센터, 1개 센터는 LH마이홈

3. 사업대상 : 저소득층,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

4.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예약 후 방문)

5. 주요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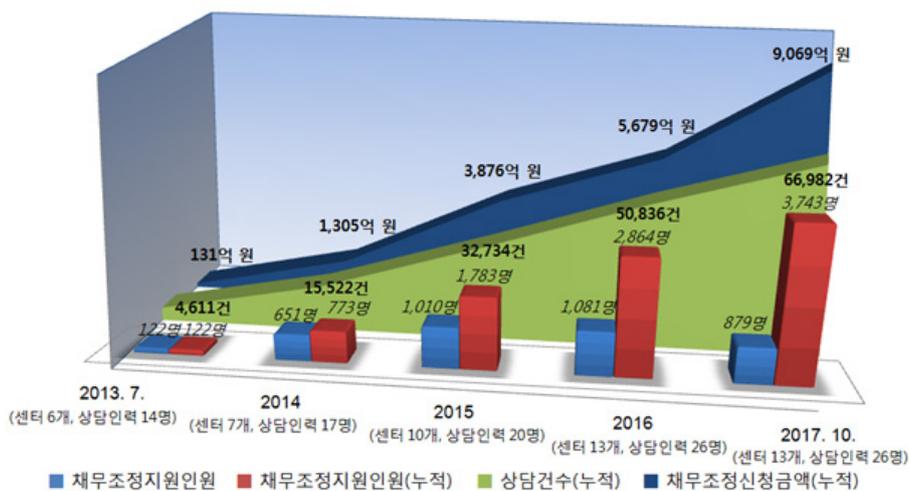
- ① 가계부채 확대 예방 : 재무상담, 서울시민 금융역량강화 교육
- ② 가계부채 규모 관리 :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안내
- ③ 복지서비스 연계 : 주거·고용·교육·의료 서비스 연계

II. 주요 기능

1. 가계 빚에 아파하는 시민들에게 치유(상담)와 실질대안 제시
2. 상담을 통한 채무자 유형별(적정/과다/빈곤) 맞춤형 솔루션 제시
3.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사회안전망 연계

III. 운영 성과

1. 가계부채 확대 예방 : 빚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예방
 - ① 시민에 대한 신용 및 수입지출관리 등 재무상담
 - ② 취약계층과 맞닿은 사회복지종사자 등 대상 교육
 - 사회복지종사자(전공생) 대상 금융교육,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교육
 -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상담 및 채무조정 캠페인 운영
 - ③ 서울회생법원 업무협조를 통한 파산채무자 신용관리교육, NEW START 상담지원
 - ④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청년부채 해결을 위한 상담, 교육지원
2. 가계부채 규모 관리 : 빚으로 질식당하는 시민의 가계 빚 면책
 - ①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단(5인)과 우호적 업무체계 구축
 - ② 센터 신청사건은 2개 전담재판부 관할 아래 고유번호 부여(회생법원 실무준칙)
 - ③ 2017. 10. 현재 서울시민 21,187명에게 66,982 건의 누적 상담 솔루션 제공
 - ④ 같은 기간 3,743명 서울시민 가계부채 9,069억 원 면책 지원



※ 누적상담솔루션: 사람 기준 실적 관리 시 실적증진을 위해 심층상담 회피 경향 발생 우려 존재
 시민 1인에 대한 심층상담을 위해 상담센터는 상담솔루션제공 횟수를 실적으로 관리
 (예시 : 1인에 대한 20회 상담시 20건으로 집계)

3. 복지포함 각종 서비스 연계 : 빛으로 넘어진 시민의 재출발지원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0월말)
연계실적	2,082건	64건	269건	653건	600건	496건

- ① 재무상담, 채무조정 및 복지서비스 융합서비스 상담 제공 및 연계
- ② 법률 문턱에서 좌절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동행서비스 지원
- ③ 채권추심압력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
- ④ 주거, 일자리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마이홈센터 등)

4. 제도개선 및 센터 업무체계 내실화

- ① 대출엄격규제 / 일원화된 20%미만 금리 인하 / 채무확인서 발급비용 폐지 등
- ② 공적서비스 제공 금융복지상담관 명칭 변경, 감정노동치유 워크숍(3회)
- ③ 업무효율성 및 28명 상담관 역량 강화를 위한 센터 지침·매뉴얼 체계화

주빌리은행과 함께 하는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

CHAPTER 05

연구보고

-
- **가계부채상담기구로서 센터의 역할 및 개선 방향**
진정란 소비자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가계부채 실태 파악 및 가계부채상담제도 개선 방향 제언

주빌리은행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진정란 소비자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요약

본 보고서는 첫째, 주빌리은행과 금융복지상담센터(경기, 성남, 전남)의 2016년 가계부채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금융복지상담센터 내담자들의 가계부채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현행 가계부채 상담제도 현황을 조사하여,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의 악성 가계부채 문제

주빌리은행 및 금융복지상담센터(경기, 성남, 전남)의 2016년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을 방문하는 내담자에게는 채무조정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 중 70% 이상의 가구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이었으며, 약 50%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었다. 직업도 대부분이 일용직/계약직이거나 무직(공공근로 포함)이었다.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계 부채를 탕감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생활비보다는 타인채무보증/상속채무나 사업비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분석 대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교육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채무자 중심의 재무설계 및 상담 서비스 기능 강화되어야

주빌리은행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서비스 신청동기 중 '채무조정'이 87.7%로 가장 많았고, 제공되었던 상담솔루션도 채무조정안내가 87.9%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가계부채 부실화 사전예방 차원에서 금융상담, 재무설계의 서비스 제공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뤄졌다.

이는 계층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도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채무자 중심의 재무설계 및 상담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확대시키기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계부채 문제를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점, 금융당국 혁신의 필요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화 문제 등과 연관시켜 본다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현재 위치는 매우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위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립의 근거가 지자체 조례 수준이 아닌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융상담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금융상담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 재정립 필요

지난해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채권자 중심,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채무 조정, 너무 긴 상환기간, 사전 예방 불가능, 사후적 조치조차 채권회수에 초점을 맞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게다가 연체발생시 채권자 협의를 통한 사전적 채무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채무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채권회수에 초점이 맞춰질 우려 높다.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상담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고려하여, 가계부채 상담 및 채무조정, 복지연계 서비스 등을 전담하는 신용상담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신용상담기구로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역할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을 포함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에서 보면, 정부와 민간기구의 서민금융정책에 있어서 거버넌스가 중요하며, 이때 민간기구는 채권자 중심의 조직보다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다양한 편당을 통해 채무자를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서민금융정책이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두 곳으로 이원화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다소 중복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설립목적, 서비스 내용, 운영 주체 등에 따라 각 기관의 위상과 역할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채권자 중심의 서민금융지원기관이 금융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기보다는 비영리 민간기구에 대한 간접적지원을 통해 서민금융정책을 실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융복지 확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더 나아가 서민금융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본연의 설립목적을 실현하려면 1) 금융 소비자,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기관, 2)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가계 재무 컨설팅 기관, 3)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을 감시하는 감시기구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립의 근거가 지자체 조례 수준이 아닌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융상담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금융상담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용상담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고, 신용상담 전담기구로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목적 및 역할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835)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 구성에 금융회사 출자 금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자 및 투자를 허용한 조항 삭제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로 국민행복기금을 두지 못하게 함, 서민금융진흥원장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능 및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협조 명시 등이 중요한 개정 사항이다.

셋째, 서민금융정책을 거대 금융기관 차원에서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서민금융 분야에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시대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되고, 이는 서민금융의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미 해외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제3섹터, 즉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이 중요한 서민금융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지역은행 등과 같이 지역중심, 조합원 중심의 서민금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의 소상공인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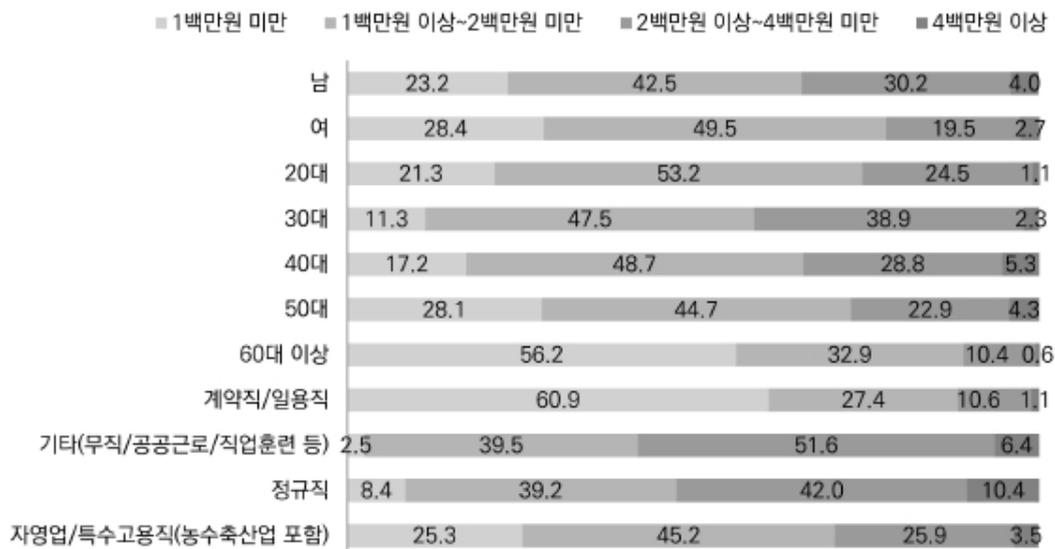
■ 취약계층의 이중고통 - '가계부채'와 '최저생활수준'

1. 주빌리은행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는 가계부채 상담자에게는 채무조정 의 문제는 물론 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보 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상담자 중 70% 이상이 가구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
- 약 50%가 월세에 거주
- 자산 1천만원 미만이 46.3%, 대부분 주택(상가)임차보증금
- 대부분이 일용직/계약직이거나 무직(공공근로 포함)

2.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탕감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음.

〈그림 1〉 성별/연령대/직업별 가구월평균소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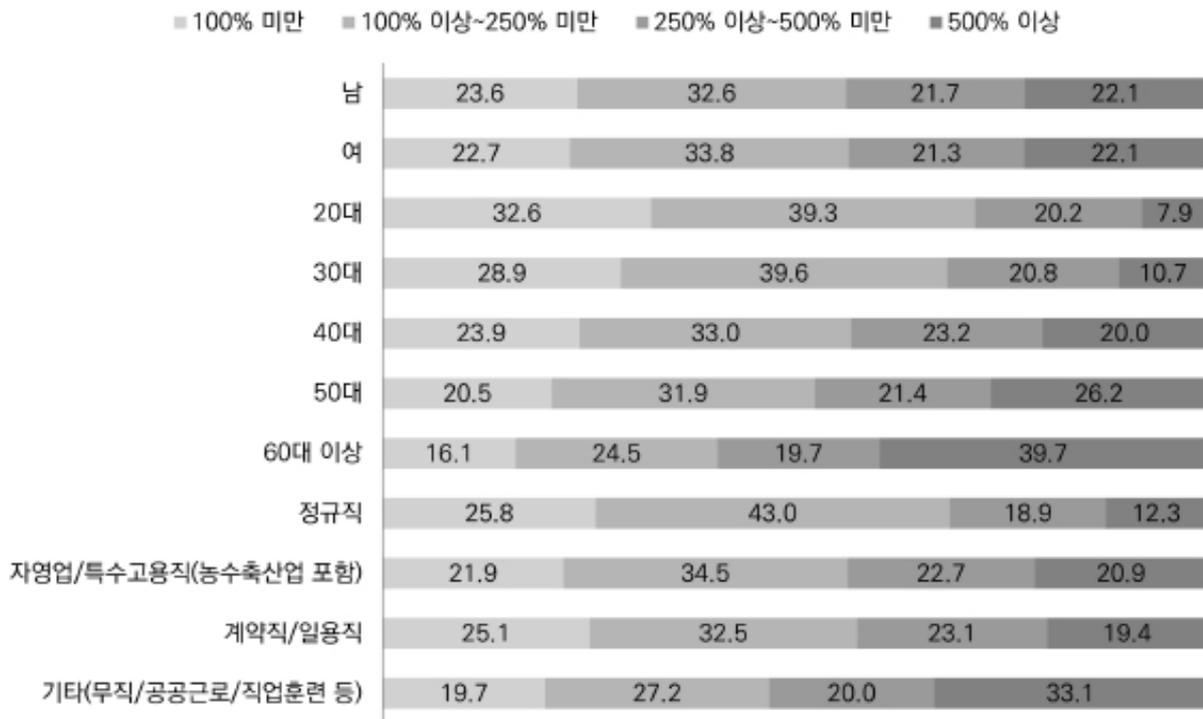


■ 고령화 사회, 노인빈곤층의 가계부채 부실화 심각

1. 연령 높을수록 가구연평균소득대비 부채비율 높게 나타나

- 60대 이상, 50대, 4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채비율 500% 이상이 높게 나타나
- 60대 이상 39.7%(185명), 50대 26.2%(217명), 40대 20.0%(206명)
-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경우, 젊었을 때부터 부채가 누적되었고, 고연령으로 인한 소득 저하, 사회 보장제도의 미흡 등의 이유로 악성 부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그림 2〉 성별/연령대별/직업별 가구연평균소득대비 부채비율 (%)



■ 고용 불안정한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부실화 심각

1. 미래 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불안정한 고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 심각

- 직업별 채무총액 평균은 정규직 714.67만원, 자영업/특수고용직(농수축산업 포함) 9328.50만원, 계약직/일용직 6466.70만원, 기타(무직/직업훈련/공공근로 등) 9521.07 만원으로 자영업/특수고용직(농수축산업 포함), 기타(무직/직업훈련/공공근로 등) 다른 직업에 비해 채무총액 평균이 높게 나타나
- 직업별 가구연평균소득대비 부채비율 평균을 비교하면 정규직 271.72%, 자영업/특수고용직(농수축산업 포함) 505.08%, 계약직/일용직 508.18%, 기타(무직/직업훈련/공공근로 등) 907.98%.

〈표 1〉 성별 채무총액 및 가구연평균소득대비 부채비율 평균 (만원, 명)

구분		평균	빈도	표준편차	t값
채무 총액	남	9850.81	2399	56180.055	3.460**
	여	5786.22	1627	10258.967	
가구 연평균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남	653.37	1927	3538.559	1.757
	여	495.46	1183	1366.426	

■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

1. 연령대별, 직업별 '생활비'가 가장 큰 부채원인

- 연령별로는 20·30대 16.3%(576명), 40·50대 33.7%(1188명), 60대이상 8.2%(289명)이 생활비가 부채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 직업별로는 정규직 8.7%(294명), 자영업/특수고용직(농수축산업 포함) 6.4%(215명), 계약직/일용직 21.6%(729명), 기타(무직/공공근로/직업훈련 등) 21.9%(739명)이 생활비가 부채원인으로 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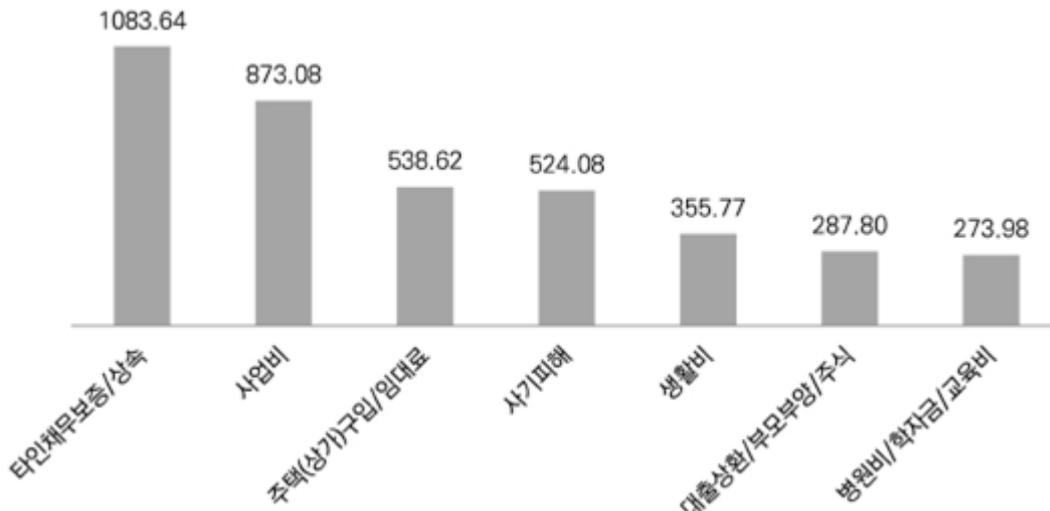
〈표 2〉 연령대별/직업별 부채원인 (복수응답) (명, %)

		생활비	사업비	타인 채무보증/ 상속채무	사기 피해	주택(상가) 구입/ 임대료	병원비/ 학자금/ 교육비	주식/ 대출상환 등	계
연령 대	20·30대	576(16.3)	130(3.7)	102(2.9)	155(4.4)	34(1.0)	126(3.6)	87(2.5)	885(25.1)
	40·50대	1188(33.7)	635(18.0)	246(7.0)	242(6.9)	102(2.9)	216(6.1)	66(1.9)	2072(58.8)
	60대이상	289(8.2)	176(5.0)	84(2.4)	77(2.2)	16(0.5)	34(1.0)	8(0.2)	567(16.1)
	계	2053(58.3)	941(26.7)	432(12.3)	474(13.5)	152(4.3)	376(10.7)	161(4.6)	3524(100)
직업	정규직	294(8.7)	77(2.3)	75(2.2)	72(2.1)	23(0.7)	48(1.4)	54(1.6)	456(13.5)
	자영업/ 특수고용직 (농수축산업 포 함)	215(6.4)	156(4.6)	36(1.1)	48(1.4)	25(0.7)	28(0.8)	7(0.2)	370(11.0)
	계약직/ 일용직	729(21.6)	360(10.7)	155(4.6)	155(4.6)	64(1.9)	125(3.7)	58(1.7)	1274(37.7)
	기타(무직/ 공공근로/ 직업훈련 등)	739(21.9)	307(9.1)	146(4.3)	176(5.2)	35(1.0)	156(4.6)	38(1.1)	1275(37.8)
	계	1977(58.6)	900(26.7)	412(12.2)	451(13.4)	147(4.4)	357(10.6)	157(4.7)	3375(100)

■ '타인채무보증/상속채무'로 인한 평균부채비율 가장 높아

1. 부채원인 중 '타인채무보증/상속채무'에 의한 가구연평균소득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2. 연대보증, 가족 간 채무 공유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2차, 3차로 이어지는 가계부채 부담 증가
- 부채원인에 따른 가구연평균소득대비 부채비율 평균을 살펴본 결과, 타인채무보증/상속채무의 평균 부채비율이 1083.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업비가 평균 873.08%로 높게 나타남.
 - 생활비는 빈도수가 높는데 반해 부채비율 평균은 355.76으로 다른 부채원인에 비해 낮은 편

〈그림 3〉 부채원인에 따른 가구연평균소득대비 부채비율 평균 (복수응답) (%)



■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 대부분

1. 취약계층 대부분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이용
- 성별로는 남성 57.0%(1203명), 여성 47.2%(995명), 연령대별로는 20·30대 20.2%(427명), 40·50대 62.4%(1315명), 60대이상 21.6%(456명)이 신용 대출 이용
 - 직업별로는 기타(무직/공공근로/직업훈련 등) 44.3%(884명), 계약직/일용직 35.8%(715명), 자영업/특수고용직(농수축산업 포함) 14.0%(279명), 정규직 10.5%(209명)이 신용대출 이용

〈표 3〉 성별/연령대별/직업별 부채종류 (복수응답) (명, %)

		담보대출 (주택/상가/보험/ 예금 등)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외상 포함)	세금/벌금 등	계
성별	남	169(8.0)	1203(57.0)	5(0.2)	1152(54.6)
	여	156(7.4)	995(47.2)	4(0.2)	957(45.4)
	계	325(15.4)	2198(104.2)	9(0.4)	2109(100)
연령대	20·30대	57(2.7)	427(20.2)	1(0.0)	411(19.5)
	40·50대	206(9.8)	1315(62.4)	5(0.2)	1262(59.8)
	60대이상	62(2.9)	456(21.6)	3(0.1)	436(20.7)
	계	325(15.4)	2198(104.2)	9(0.4)	2109(100)
직업	정규직	23(1.2)	209(10.5)	0(0.0)	184(9.2)
	자영업/특수고용직 (농수축산업 포함)	75(3.8)	279(14.0)	2(0.1)	290(14.5)
	계약직/일용직	99(5.0)	715(35.8)	4(0.2)	685(34.3)
	기타(무직/공공근로/ 직업훈련 등)	109(5.5)	884(44.3)	2(0.1)	838(42.0)
	계	306(15.3)	2087(104.5)	8(0.4)	1997(100)

■ 신용대출 · 담보대출에 따른 부채비율은 큰 차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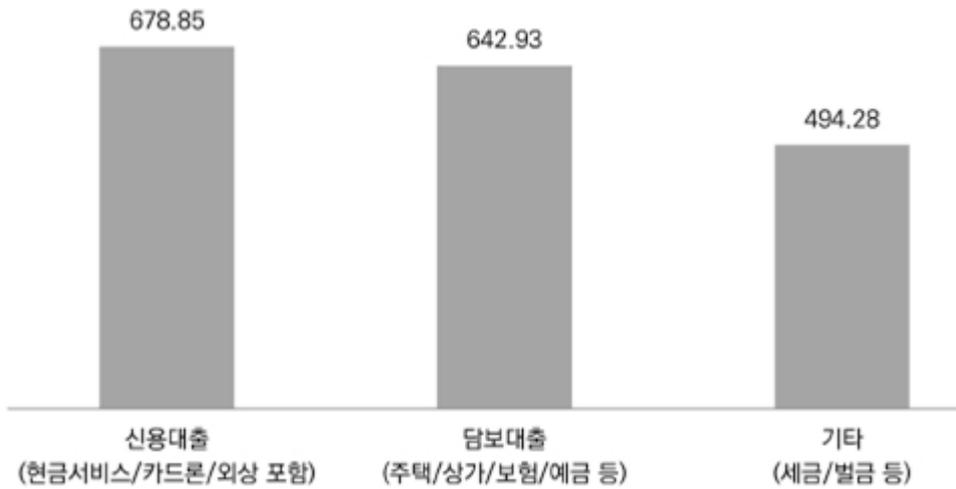
1. 신용대출이 담보대출에 비해 빈도수는 5배 이상으로 많았지만 가구연평균소득대비 부채비율로 보면 큰 차이는 없음.

• 그 외 세금이나 벌금을 부채로 갖고 있는 경우도 빈도는 매우 낮지만 부채비율은 약 50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부채종류에 따른 가구연평균소득대비 부채비율 평균 (복수응답) (% , 명)

	평균	빈도
담보대출(주택/상가/보험/예금 등)	642.93	260
신용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외상 포함)	678.85	1690
기타(세금/벌금 등)	494.28	7

〈그림 4〉 부채종류에 따른 가구연평균소득대비 부채비율 평균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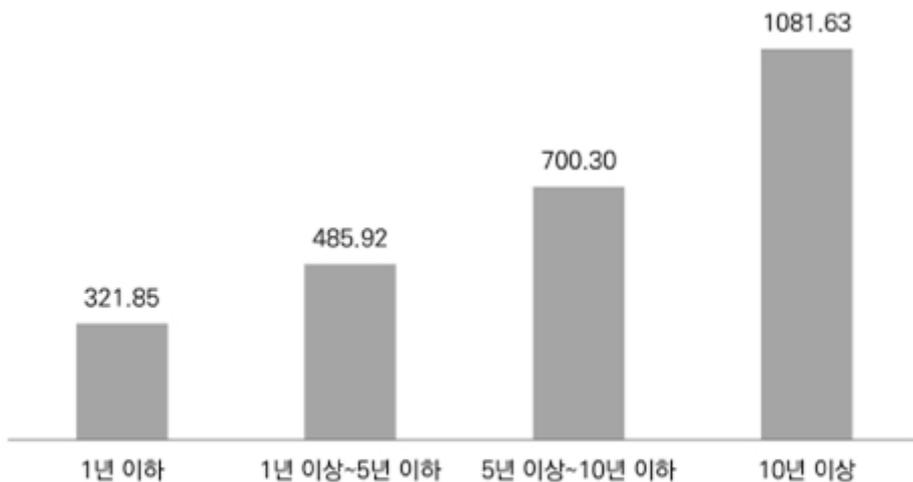


■ 연체기간 길수록 부채비율 급증

1. 연체기간이 길수록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악성부채가 됨에 따라 채무자 가계부채 상담 채널을 확대하여, 가계부채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

• 연체기간별 가구연평균소득대비 부채비율 평균을 분석한 결과, 1년이하 321.85%, 1년이상~5년이하 485.92%, 5년이상~10년이하 700.33%, 10년이상 1081.63%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연체기간에 따른 가구연평균소득대비 부채비율 평균 (%)



II. 현행 가계부채상담제도의 문제점

■ 주빌리은행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현황

〈표 5〉 주빌리은행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현황

	설립 시기	설립 근거	조직	상담 건수*
서울 금융복지 상담센터	2013년 7월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1.5., 타법개정]	중앙 1개/ 지역 12개 등 13개 센터 운영 상담사 31명	16847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2015년 7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4.10.2.] [경기도조례 제4778호, 2014.9.24., 일부개정]	중앙 1개/ 지역 6개 등 총 7개 센터 운영 상담사 8명	3969건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2015년 3월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6.20.]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987호, 2016.6.20., 일부개정]	센터장 1명, 상담사 5명, 불법모니터링 요원 3명	2924건
주빌리은행	2015년 8월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1명, 이사 13명, 실무자 2명, 상담사 3명	2086건**
서울 은평구 금융복지 상담센터	2016년 4월	-	센터장 1명 상담사 2명	434건
전남 금융복지 상담센터	2016년 5월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전라남도조례 제4001호, 2015.12.31., 제정]	동부 1개/서부 1개 총 2개 센터 운영 센터장 1명, 상담사 9명	891건
전주 금융복지 상담소	2016년 9월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2.28.] [전주시조례 제3384호, 2017.02.28., 제정]	소장 1명 상담사 2명	485건
광주 광산구 금융복지 상담센터	2016년 9월	금융복지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3.15.]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 제1259호, 2016.3.15., 제정]	상담사 1명	148건

-: 관련 자료 없음 *설립 이후 2016년 12월까지 누적 **2015년 11월~ 2016년 12월까지 누적

출처 : 주빌리은행 및 각 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 및 정책 제언",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보고 대회 자료집』 등의 자료를 본 연구에 맞게 재편집하여 정리하였음. 상담 건수는 재상담을 제외한 신규상담 건수임.

■ 주빌리은행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 진단 및 비판

1. 채무자 가계부채 상담기구로서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 정착

• 기존의 정부나 채권자 주도의 가계부채, 서민금융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사후적 관리 차원에서는 채무자 관점에서 계층별, 부채성격에 따른 부채관리 및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했고, 사전예방적 차원에서는 시민대상으로 재무관리 및 금융교육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금융복지 공공성 확대 및 금융 소비자 보호에 기여

2. 채무자 가계부채 상담 서비스의 법률적, 제도적 정비 필요

• 현재까지의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운영 성과는 설립 초기이후 현재까지 사전예방보다는 사후관리 측면에 편중

• 따라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금융소비자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민간 기구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계 부채 부실화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최소화하기 위한 가계 재무 컨설팅 기관으로 거듭나야 함.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위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립의 근거가 지자체 조례 수준이 아닌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되어야 함.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담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상담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가정 경제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시켜 채무자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호하며, 금융정책 및 금융상품, 금융기관을 감시, 견제하여 금융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서민금융진흥원 운영 현황

〈표 6〉 서민금융지원기관 현황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립 시기	2016년 9월	2012년 6월	2014년 11월
설립 목적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	지역주민의 금융애로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설치 및 운영	저소득·저신용 서민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수 기관에 산재하여 운영되던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가동
설립 근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
조직	‘특수법인’ 원장/운영위원회/ 이사회/휴면예금관리 위원회/3본부 (경영지원, 금융지원, 자립지원)	경기/인천/강원/광주/전북/ 대구/경북/경남/제주 등에 11개 센터	부천/대전/광주/대구/부산/ 천안/목포/청주/제주/울산/ 춘천/강릉 등 총 33개 센터 구축
운영 성과	-	채무조정 및 대환대출 (소액대출) 실행 및 부채 증명원 발급/누계 72,182건 (2016년 10월31일 기준)	서민금융지원(미소금융, 햇살론 등) 채무조정 상담 /누계 175,803건 (2016년 10월말 기준)
주요 기능	(서민금융 지원) 미소금융, 햇살론, 바뀔드림론 운영 (자활·재기지원) 서민금융 관련 상담·취업·교육 기능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서민금융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 콜센터 통합	주요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 주기적인 금융교육. 서민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각종 금융관련 민원사항 접수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가 각각 고유업무수행하면서, 필요시 타 기관과 협력. 기관연계 효과 높이기 위해 금융상품 조사·중개 등 서민형 PB업무 수행.

■ 서민금융진흥원 성과 진단 및 문제점

1. 채권자 중심의 서민금융지원, 과연 실효성 있는가

• 서민금융진흥원이 판매하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이 실제로 금융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 필요.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주요한 악성 부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탁,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 기구를 지원하거나 지역금융 활성화를 통해 서민금융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지역 금융은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금융 지원을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효과적인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2. 이해관계자로부터 중립적 입장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한가

• 현행 서민금융진흥원은 도리어 채무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구제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보다는 채권회수에 초점이 맞춰질 우려 높음.

• 게다가 채무자 상담이 이해관계로부터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 중립적 관점을 유지하기 힘들.

3.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복지연계 서비스가 가능한가

• 금융취약계층 및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채무뿐만 아니라 일자리, 복지, 주거 등 다양한 사회자원의 활용을 병행한 종합상담이 이뤄져야 함.

• 한국은 채무자를 위한 신용상담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상담 및 채무 조정, 복지연계 서비스 등을 전담하는 신용상담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 신용상담기구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움.

금융복지상담센터 · 서민금융진흥원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필요

1. 이미 외국에 많은 비영리민간기구들이 소비자 신용 문제, 금융 소비자 피해, 채무자의 생활권 보장, 서민금융 서비스 확대 등의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2. 해외의 사례에서 보면, 정부와 민간기구의 서민금융정책에 있어서 거버넌스가 중요하며, 이때 민간기구는 채권자 중심의 조직보다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다양한 펀딩을 통해 채무자를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3. 따라서 현재 서민금융정책이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두 곳으로 이원화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다소 중복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설립목적, 서비스 내용, 운영주체 등에 따라 각 기관의 위상과 역할이 구분될 필요가 있음.

4. 특히 채권자 중심의 서민금융지원기관이 금융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기보다는 비영리 민간기구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정책을 실현하는 게 바람직 할 것임.

■ 첫째, 금융복지상담서비스 제도화

1. 가계부채 문제를 개인의 채무불이행과 도덕적 해이, 신용회복 등의 문제로 국한해서 접근하는 것은 금융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적 약자, 금융소외계층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근본적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

2.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는 복지의 공공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립취지 및 근거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되어야 함.

3. 즉, 금융복지상담센터는 1) 금융 소비자,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기관, 2)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가계 재무 컨설팅 기관, 3)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을 감시하는 감시기구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4.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립의 근거가 지 자체 조례 수준이 아닌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되어야 함.

5. 이와 함께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담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상담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역할 재조정

1. 현행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용상담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고, 신용상담 전담기구로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함. 이와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목적 및 역할은 재조정될 필요가 있음.

2.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민금융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셋째, 지자체와의 협치를 통한 지역 중심의 금융복지서비스 실현 필요

1. 서민금융정책을 거대 금융기관 차원에서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
2. 서민금융 분야에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시대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되고, 이는 서민금융의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
3. 이미 해외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제3섹터, 즉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이 중요한 서민금융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지역은행 등과 같이 지역중심, 조합원 중심의 서민금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의 소상공인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주빌리은행과 함께 하는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

CHAPTER 06

종합토론

-
- 바람직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립근거, 기능 및 역할
토론좌장 | 진정란 연구위원 (소비자정책연구소)
토론위원 | 최건호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
| 김미선 센터장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주빌리은행과 함께 하는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



주빌리은행과 함께하는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